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안내

- 고 시 : 제2007-158호
- 공포일자 : 2007. 12. 31
- 담당부처 : 전력산업팀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협회(www.keea.or.kr)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5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 ◎ 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자부령 제432호, 2007. 11. 23)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신기술 지정요건 중 경제성을 별도의 심사요건으로 정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을 장려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나.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11조제3항)
- 다. 공동주택 공사감리와 일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의 통합감리를 제한함으로써 감리의 효율을 향상시킴(제32조제4항)

### ◎ 시행일

이 요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개정안내

- 고 시 : 제2007-159호
- 공포일자 : 2007. 12. 31
- 담당부처 : 전력산업팀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협회(www.keea.or.kr)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59호

### ◎ 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산자부령 제432호, 2007. 11. 23)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동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개정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평가하는 경우 종합평점 5순위까지의 감리업자에게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 함(제10조의3제2항)
- 나. 시·도지사가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1년간 PQ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제10조의3제7항 내지 제9항)
- 다.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명확화(제13조)
  - ※ 시행규칙 개정 누락사항 → 법제처에서 관련고시로 운영권고
- 라. PQ평가기준 운영에 따른 기준의 적용·보완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의 재량권으로 부여함(안 제14조)
- 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훈가점 기준을 삭제하고, 교육훈련 실적을 가점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분의 본점으로 이관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각 제2호의 상훈가점 평가, 각 제1호라목의 교육실적 평가)
- 바. 감리업자의 유사용역실적 평가에 있어 준공된 실적도 수행중인 실적과 같이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한 기간에 따라 환산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함(별표 2 및 별표 3 각 제1호나목의 유사용역실적 평가)
- 사.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PQ참여를 지양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효율성을 도모함(별표 2 및 별표 3 각 제1호 가목의 참여감리원 평가)
- 자.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 시공 및 공사감리업무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안전관리 경력을 일부 인정하여 관련법령과의 형평성

을 도모함(별표 3 부표 3-1 제1호라목)

### 3.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부표 1-1] 제1호라목, [부표 2-1] 제1호라목 (1) 및 [부표 3-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처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처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전에 공고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지면관계로 내용을 다 게재 헤드리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http://www.keea.or.kr))의 자료실-고시 및 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 내용안내

- 법 률 : 제8800호
- 공포일자 : 2007. 12. 27
- 담당부처 : 에너지관리팀
- 전문참조 : 산업자원부([www.mocie.go.kr](http://www.mocie.go.kr))

### ◎ 개정이유

「에너지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860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으로 이 법의 일부 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待期電力低減對象製品)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설치검사가 면제되고 있는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의 도입(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1) 대기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지정·관리제도가 산업자원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전력저감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급·확대하는데 문제가 있음.

-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대기 전력저감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도록 하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전력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22조)**

- (1)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 확인필요(안 제39조제7항제4호 신설)**

- (1)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유류용 관류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하여 사고발생 시 증발이 빠르고 파열·변형·누설사고 등 위험요소가 더 많으므로,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하여도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안 제63조 및 제72조제3호)**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 삭제)**

- (1)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수요의 절감 등을 위하여 주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권한이 2009년 7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어 있으나,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및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